

Y-SMU포럼 회칙

- 제 정 2011. 5. 14
- 개 정 2014. 3. 5

제1 장 총 칙

제1 조(명 칭) 본회는 Y-SMU포럼(*Youth-Saemaulundong Forum*) 이라 통칭하며, 지역(직할) 포럼과 산하 단위 포럼의 명칭은 아래와 같다.

1. 지역(또는 직할) 포럼

- ① Y-SMU포럼 앞부분에 해당 지역명(시도는 2글자 약칭 및 시군구)을 넣는다.
(예시 ○○○Y-SMU포럼)
- ② 활동 여건상 필요한 경우 포럼 공식 명칭 뒤에 별칭을 붙여 사용할 수 있다.
(예시 ○○○Y-SMU포럼 △△△)
- ③ 중앙에서 직접 관장하는 직할 포럼은 Y-SMU포럼 앞부분에 별칭을 넣는다.
(예시 ○○○Y-SMU포럼)

2. 단위(동아리 등) 포럼

- ① 청년 조직은 Y-SMU청년포럼 앞부분에 고유의 명칭을 넣으며(○○Y-SMU청년포럼) 고유 명칭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 ② 대학생 조직은 Y-SMU포럼 앞부분에 해당 대학명을 넣으며(○○대학교 Y-SMU포럼), 분교나 분리 되어진 경우에는 따로 정한다.
- ③ 대학내 동아리로 등록할 경우에는 학칙에 따르되 「Y-SMU포럼」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2 조(목 적) 청년 학생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글로벌 리더십 배양과 새마을운동 전개를 뒷받침하는 차세대 지도자로 육성시켜 지역과 나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사무소는 전국 시도, 시군구에 두며 해당 대학교 등에 따로 둘 수 있다.

제4 조(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글로벌 스탠더드 확산을 위한 On-Off Line 활동
2. 회원들의 전공과 특기를 활용한 재능 봉사활동
3. 국내외 각종봉사, 지역 내 청소년봉사대 지도 관리 및 연계활동
4. 학술대회, 글로벌 리더 교육, 시대적 이슈 중심의 컨퍼런스
5. 지역 브랜드 높이기, 도농 교류활동
6.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활동

7.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 5 조 (운영원칙)

1. 본회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 종교 등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2. 각급 Y-SMU포럼은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결정에 따라 독립적, 자율적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 원) 본회 회원은 뚜렷한 국가관과 나라사랑 정신에 입각한 청년, 대학생으로서 회칙에 찬동하고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탈퇴는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서 제출로 가름한다.

1. 대학생 회원(휴학생 포함)
2. 청년 회원(40세 이하)
3. 명예 회원(포럼 활동 회원중 40세를 초과한 자로서, 해당지역 새마을청년회 회원 가입 자격을 갖는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각급 포럼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및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 각종 회의 참석 및 의결사항 준수
3. 각급 포럼이 정하는 소정의 회비 납부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 원) 각급 포럼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1~3인
3. 총 무 1~2인
4. 감 사 1~2인
5. 필요시 분과(장) 및 부서(장)를 둘 수 있다.

제 10 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1. 임원중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총무와 분과장 등은 임원회의를 통해 회장이 임명한다.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이 임기중 사퇴 할 경

우 그 임기는 잔여임기에 한하며,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자격(피선거권)은 회원중 리더쉽이 있는 자로 한다.
4. 임원중 포럼 회장의 인준은 해당 새마을운동 계선 조직을 통해 중앙회장 명의의 인준서를 발급한다.

제 11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소속 포럼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하며 해당 포럼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 선출 이전까지 직무를 대행한다(2인 이상 시 연장자로 한다).
3. 총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포럼의 각종 회의나 행사시 연락, 서무, 재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감사는 포럼 업무 집행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분과 및 부서 책임자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분야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 12 조 (명예회장 및 고문)

1. 각급 포럼은 전직 회장 및 포럼에 관심이 깊은 인사를 명예회장 및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추대할 수 있다.
2. 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재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3 조 (총회 및 소집)

1. 각급 포럼은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두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가 소집한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청할 때
 - ③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총회는 회장이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전에 일시, 장소,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통지서나 유무선(인터넷, 전화 등) 수단 등을 통해 각 회원에게 전달하여 소집한다.
5.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은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4 조 (감사의 총회소집) 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는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회장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을 때
2. 제13조 제3항 제②호 및 제③호의 규정에 의한 총회 소집을 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지 아니한 때

제 15 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변경은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임원 선임시 임시회장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출석이 과반수에 미달할 때에는 대표 또는 감사는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최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6 조 (총회의 회의록) 총회의 회의록에는 회의내용과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과 회장이 지명한 2인 이상의 출석회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17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회원의 상벌 및 제명
5.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 18 조 (운영위원회)

1. 각급 지역(중앙, 시도, 시군구) 포럼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청년운동 전문가, 지역 원로, 후원 기업인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해당 포럼 회장, 동아리 지도교수, 해당 새마을운동 사무처 처장(또는 사무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3.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추천 및 의결로 선출한다.

제 19 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해당 포럼 및 산하 포럼 운영에 대한 지도 및 지원
2. 포럼 재정확보 및 기금조성

3. 각급 포럼 간 협력
4. 회원에 대한 상벌

제 20 조 (운영위원회 소집 및 회의 운영)

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③ 소속 포럼 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전에 일시, 장소,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통지서나 유무선(인터넷, 전화 등) 수단 등을 통해 각 위원에게 전달하여 소집한다.
3. 제1항 제②호 및 ③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새마을운동 사무처 처장(또는 국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및 의결과 회의록 작성은 총회에 준한다.
5. 운영위원장의 인준은 해당 새마을운동 계선 조직을 통해 중앙회장명의로 인준서를 발급한다.

제 21 조 (상 벌) 포럼 회원이 아래 각호에 해당되었을 경우 표창이나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1. 활동참여가 우수하거나 포럼의 명예를 높인 회원에게는 자체 표창 수여 및 외부 표창 추천을 할 수 있다.
2.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치 않거나, 회칙을 위반하여 포럼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그리고 아래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제명한다.
 - ① 범죄나 반 사회적 행위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부도덕한 행동으로 회원들에게 신망과 지도력을 상실한 자

제 7 장 재 정

제 22 조 (운영재원)

1. 본회는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 ① 회원의 회비 및 특별회비
 - ② 임원 및 후원 기업 등의 기부금
 - ③ 새마을 각급조직(중앙화·시도·시군구)의 지원금 등

제 23 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4 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산 등)

1. 각급 포럼은 매 회계년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각급 포럼은 매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 25 조 (중앙회와의 관계)

1. 각급 포럼과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상호 자율적, 수평적,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단 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각급 포럼은 새마을운동중앙회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중앙에서 개최하는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3. 회칙의 총칙이나 운영위원회 규정 등 주요사항에 대한 개정과 운영에 관해서는 중앙회(중앙 운영위원회)의 지도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6 조 (해산) 포럼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제 27 조 (법령준용 및 규정 제정)

1. 본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2.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유권해석이 필요하거나 중요한 사항은 중앙회(중앙 운영위원회)의 지도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단위 포럼의 준칙 제정) 단위 포럼(동아리 포함)의 준칙은 본 회칙의 총칙 등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게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시도 또는 시군구) 포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회칙 열람) 준칙을 제정하여 운영중인 단위 포럼에서 관련 분쟁이나 민원 발생시 본 회칙을 준용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며, 지역 포럼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칙 열람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